

II.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12월 18일 (파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12월 21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12월 21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1996년 12월 23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보사
위원회】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1996년 12월 24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보사
위원회】 의 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공보담당관 윤덕진)

가. 제안이유

-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도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5억원에 대한 수익금으로는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기금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수익금으로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 지원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조정
- 운용기금 사용대상에 체육회 사무국운영비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홍덕기)

- 수익금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부족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체육회 사무국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97년 5천만원)기금 조성을 10억원으로 증액,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동 조례 제5조(기금의 운영) 및 동조례 제6조(운용기금의 사용)의 개정사항은 기금 조성할때까지 수익금 전액을 기금조성 적립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을 수익금 일부를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으로서
-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조치가 요망됨.

4. 질의 · 답변요지

질)10억 정기에탁시 이율은?

답)년 11.52%임. 년 1억5천만원 정도임.

질)내년 운영비 지원 예산내역은?

답)체육회 운영비로 5천만원임. 정액보조로 480만원 지원됨.

질)10억원 기금조성은 언제까지 하는가?

답)당초 5억원을 99년도까지 조성계획이었으므로 이에 맞춰 조성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집행기관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